

국 방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운영 효율과 업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신설 및 폐지, 명칭을 변경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의 일부 조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나. 업무 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관련 기존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과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을 각각 정보체계융합담당관과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으로, 군비통제과를 군비통제정책과로, 탄약관리과를 탄약수송관리과로, 국유재산과를 국유재산환경과로, 전력조정평가과와 전력계획과를 각각 기반전력계획평가과와 공통전력계획평가과로, 전력구조개편담당관·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인사교육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관·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 기존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국방환경협력팀을 폐지하여 타 부서에 기능을 이관하고, 국방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안전정책팀, 군 주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군주거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사이버정책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체계융합담당관·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사이버정책담당관”으로,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 및”을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체계융합담당관·”로,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은”을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1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1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3. 전력운영 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제4조의2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을 “정보체계융합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정보체계 관련”을 “국방정보체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방정보체계의”를 “국방정보체계의 소요,”로, “조정”을 “예산편성 검토·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험평가 조정·통제”를 “형상관리, 품질보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10호) 중 “상용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을 “정보통신기반의 개발·획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정보체계의 개발·획득에 관한 업무
4. 국방정보체계의 통합 방안 정립 및 조정·통제

6.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10. 정보통신기반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8. 정보통신기반의 소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
11. 국방정보체계·정보통신기반 관련 대외 협력
12. 정보자원의 정책 발전 및 효율적 운용관리
13. 전자정부에 관한 업무 및 조정·통제
1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감독

제4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을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보통신기반”을 “국방정보통신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9호) 중 “주파수”를 “위성궤도”로, “관리정책”을 “보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방정보통신기반의 획득·활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국방정보통신기술 실증연구개발 사업 검토·조정 및 획득·활용 관련 대외협력
4. 군 주파수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조정·통제
9. 국방 소프트웨어 및 공통기반시스템(개방형 OS, VoIP, VTC 등) 정책·제도 발전

6. 국방 네트워크 정책·제도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7. 국방 이동통신 네트워크·단말 및 사물인터넷 정책 및 제도 발전
8. 국방 클라우드 정책·제도 발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0. 국방 정보통신 표준관리 및 상호운용성 정책·제도 발전
11. 국방 빅데이터·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12. 블록체인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13. 국방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및 활용(개방) 정책 수립·시행
14.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및 국방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 업무

제4조의2제15항제2호 중 “정부부처간”을 “유관부처·기관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의 발전”을 “획득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제4조의2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를 “⑯”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기술”을 “사이버분야 신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방정보체계”를 “국방사이버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각 군 기관의 사이버 방호 수준 평가와 관리

제9조제3항 중 “정책기획과·기본정책과·방위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문화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

평화협력과·다자안보정책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과·미사일우주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를 “정책기획과·기본정책과·방위정책과·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문화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력과·다자안보정책과·북한정책과·군비통제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로, “기본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책과장·군비통제과장”을 “기본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장·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책과장·군비통제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동남아(ASEAN 10개국)”를 각각 “남아시아국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안보대화(SDD) 관련 계획 수립, 대내·외 협조 및 업무의 조정·통제 관련 사항

8. 지역[미·일·중 및 남아시아지역은 제외한다]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제9조제10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미국 관련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제9조제1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북아 관련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제9조제1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외국민보호 관련 업무

제9조제1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지역”을 “아세안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비통제과장”을 “군비통제정책과장”으로 한다.

3. 남아시아국가(ASEAN 10개국 및 인도 등 서남아 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4. 남아시아국가(ASEAN 10개국 및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의 군사외교활동

제10조제15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군수기획과·탄약관리과·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재난관리지원과·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사업과·국유재산과·국방환경협력팀·전력정책과·전력조정평가과 및 전력계획과를 두되, 군수기획과장·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물자관리과장·재난관리지원과장·시설기획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건설관리과장·부대건설사업과장·국유재산과장·전력정책과장·전력조정평가과장 및 전력계획과장”을 “군수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관리지원과·안전정책팀·시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과·부대건설사업과·국유재산

환경과·**군주거정책과**·전력정책과·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되, 군수기획과장·물자관리과장·재난관리지원과장·시설기획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건설관리과장·부대건설사업과장·국유재산환경과장·전력정책과장·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으로, “탄약관리과장 및 장비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국방환경협력팀장”을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안전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3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종전의 제15호) 중 “주둔군”을 “주한미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수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6.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조정·통제

7. 3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발전

19.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조정

5.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22.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23.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4.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

25.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26.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27.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28.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29. 군수정보화 중·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 제기 및 검토

30.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신규소요 발굴 및 체계구축 사업 종합 및 조
정·통제

31. 군수정보체계의 관리, 운영·유지, 통합 및 표준화

32. 군수 내·외부 체계간 통합·연동 및 표준화

33. 군수업무의 정보화 기술 적용

34. 국가·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 관리

35. 군수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보좌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탄약관리과장”을 “장비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탄약”을 “장비 정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탄약분야”를 “장비운영유
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탄약
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을 “비축장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
6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

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검토
·조정

4.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6.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7.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8.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통제

10.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1.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초빙 교육 관련 업
무

12.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13.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14.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15.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추진 관련
업무

16.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17.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18.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19.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20. 군수품의 총수명주기관리 정책·제도발전 업무

21.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22. 국방 RAM(신뢰도·가용도·정비도 정책·제도 발전, 야전운용제
원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업무
23. 종합군수지원(ILS) 정책·제도발전 업무
24. 성능개량·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25.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발전 업무
26. 부품 단종 관리 정책·제도발전 업무
27.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제도발전 업무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을 “물자관
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항 제10호 중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협정”을 “영현(英顯)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운영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전력지원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4.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제11조제6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비관리과장”을 “탄
약수송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비 정비”를 “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을 “탄약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비축장비 운영”을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으로 하고, 같
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를 “군 물류정책”으로, “발전, 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 탄약 획득·비축업무 및 탄약 관리 업무 조정·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검사·정비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탄약 관련 대미협력사항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탄약 관련 종합군수지원 정책과 제도 발전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14. 국방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16. 3군 공통 민·관 수송업무 조정·통제
17. 한·미 수송지원 및 협정(MASA, KFS)에 관한 업무
18.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비행장 및 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19.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21. 수송예산 편성·운영 및 성과평가, 통계 관리
22.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제1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자관리과장”을 “재난관리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급정책의 수립과”를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5.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7.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8.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정
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통제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 일손 돕기 현황 유지·관리

제1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관리지원과장”을 “안전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중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발전
2.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추진
3. 안전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 협조
5.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조정
6. 시설물·환경 분야 안전계획 수립·조정
7. 장비·탄약, 물자, 수송 분야 안전계획 종합·수립·조정
8. 체계 개발 단계별 안전사항 검토 제도 구축
9. 현용 무기체계 안전평가, 성능개량·개조 소요 발굴
10. 안전사고 통계지표 개발·관리

제11조제9항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과장”을 “국유재산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6호, 제8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징발 부동산의 보상 및 권리

29.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30.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31.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32. 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

33.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34.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35.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검토·조정

36.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시행

제11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환경협력팀장”을 “**군주거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군 주거시설 입주자격 관리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6. 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영과 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7. 직원군인 내집마련 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

9. 군 관사·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보수에 대한 집행 관리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

제11조제16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를 “⑪”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조정평가과장”을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2. 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6. 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전시에산 편성에 관한 업무

7.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제11조제18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항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계획과장”을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위력개선사업”을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위력개선분야 관련업무의”를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 관련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방위력개선분야”를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로, “사항”을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7.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검증·시험평가·분석평가 제도 발전

제19조제3항 중 “전력구조개편담당관·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인사교육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관·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으로, “전력구조개편담당관 및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인사교육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력구조개편담당관”을 “군구조개혁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개혁(전력구조 개혁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방개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10.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1.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12.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13.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14.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
과의 협의

제19조제5항 중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을 “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 군구조 개혁 분야 총괄·조정
2. 미래 전략개념 발전 분야 연구·기획
3. 미래 지휘구조 개념발전 분야 연구·기획
4. 미래 부대구조 개념발전 분야 연구·기획
5. 미래 병력구조 개념발전 분야 연구·기획
6. 미래 전력구조 개념발전 분야 연구·기획

제19조제5항제7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12호(종전의 제6호)까지 중 “지휘·병력·부대구조”를 각각 “전력구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교육개혁담당관”을 “국방운영개혁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복지”를 각각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을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업 추진 총괄·조정
2.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운영
3. 스마트 국방혁신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4.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업에 대한 추진 점검

국방부령 제85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2월 7일”을 “2020년 ○월 ○○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기획과장”을 “국유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안전정책팀은 2023년 ○월 ○○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안전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난관리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 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 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 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 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 획담당관·소프트웨어융합정책 담당관·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 ·사이버정책담당관 및 사이버 대응기술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담당 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행정 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관· 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유지 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소프트웨어 융합정책담당관 및 사이버정책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 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화기반 체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사 이버대응기술팀장은 서기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	③ ----- 기획총괄 담당관·조직총괄담당관·조직 관리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 계획예산총괄담당관·인력운영 예산담당관·전력유지예산담당 관·재정회계담당관·정보화기 획담당관·정보체계융합담당관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사 이버정책담당관 ----- ----- -- 기획총괄담당관·조직총괄 담당관·조직관리담당관·혁신 행정담당관·계획예산총괄담당 관·인력운영예산담당관·전력 유지예산담당관·재정회계담당 관·정보화기획담당관·정보체 계융합담당관· ----- ----- 정보통신기 술정책담당관은 ----- ----- -----

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 로 보한다.	----- -----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⑥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전력운영 분야의 분석·평 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삭제>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계획예산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 ----- -----.
1.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 발전	<삭제>
4. ~ 13. (생략)	4. ~ 13. (현행과 같음)
14.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 의 수립 및 조정	<삭제>
15. 16. (생략)	15. 16. (현행과 같음)

⑨ (생략) ⑩ 전력유지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⑪·⑫ (생략) ⑬ 소프트웨어융합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2.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 3. 국방정보체계(무기체계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같다)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9. (현행과 같음) 10.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1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 1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3. 전력운영 분야의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 ⑪·⑫ (현행과 같음) ⑬ 정보체계융합담당관----- -----. 1. 국방정보체계의 ----- ----- 2. 국방정보체계의 소요, ----- 예산편성 검토·조정 3. 국방정보체계의 개발·획득에 관한 업무	4.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5. 국방정보체계의 시험평가 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6. 국방정보체계의 형상관리, 품질보증 및 감리에 관한 업무 7.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유통·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8. 국방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9.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신설> 10. 국방정보체계의 상용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한 업무 11.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과 시험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12.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4. 국방정보체계의 통합 방안 정립 및 조정·통제 5. ----- 형상관리, 품질보증----- 6.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삭제> 8. 정보통신기반의 소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 9. 정보통신기반의 개발·획득----- 10. 정보통신기반의 유지보수와 운용능력 발전 7. ----- 소프트웨어----- 11. 국방정보체계·정보통신기반 관련 대외 협력 12. 정보자원의 정책 발전 및 효율적 운용관리 13. 전자정부에 관한 업무 및 조정·통제
---	---	--	--

<u><신 설></u>	<u>14.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u> <u>지도·감독</u>
⑭ 정보화기반체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⑭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관----- -----.
1. <u>정보통신기반</u>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1. <u>국방정보통신기술</u> ----- -----
2. <u>정보통신기반의 획득</u>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 편성의 검토·조정	2. <u>국방정보통신기반의 획득·</u> <u>활용</u>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 <u>정보통신기반의 개발·획득</u> ·집행 및 승인에 관한 업무	3. <u>국방정보통신기술 실증연구</u> <u>개발</u> 사업 검토·조정 및 획득·활용 관련 대외협력
4. <u>정보통신기반의 규격화·목록화·형상관리·품질보증과</u> <u>종합군수지원</u> 업무	4. <u>군 주파수획득 및 관리정책</u> <u>의</u> 수립·조정·통제
5. <u>정보통신기반의 시험평가</u> 통제와 개발현황의 관리	<u><삭 제></u>
6. <u>정보통신기반</u>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	6. <u>국방 네트워크 정책·제도</u> <u>발전</u>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7. <u>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u> 운용 관리	7. <u>국방 이동통신 네트워크·단</u> <u>말</u> 및 사물인터넷 정책 및 제도 발전
8. <u>정보통신기반의 유지보수와</u> <u>운용능력</u> 발전	8. <u>국방 클라우드 정책·제도</u> <u>발전</u> 및 중·장기 발전계획

<u><신 설></u>	<u>수립</u>
<u><신 설></u>	9. <u>국방 소프트웨어 및 공통기</u> <u>반시스템(개방형 OS, VoIP, V</u> <u>TC 등)</u> 정책·제도 발전
<u><신 설></u>	10. <u>국방 정보통신 표준관리 및</u> <u>상호운용성</u> 정책·제도 발전
<u><신 설></u>	11. <u>국방 빅데이터·인공지능</u> <u>정책</u> 및 제도의 발전 및 중· <u>장기</u> 발전계획 수립
<u><신 설></u>	12. <u>블록체인</u>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u><신 설></u>	13. <u>국방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u> <u>리</u> 및 활용(개방) 정책 수립· <u>시행</u>
9. <u>군 주파수</u> 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조정·통제	5. -- <u>위성궤도</u> ---- <u>보호정책</u> -----
<u><신 설></u>	14. <u>국가 재난안전통신망</u> 및 <u>국</u> <u>방 정보통신망</u> 운영 관련 업 <u>무</u>
⑮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⑮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국가 사이버안보</u> 관련 <u>정부</u> <u>부처간</u> 협의	2. ----- <u>유관</u> <u>부처·기관간</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체계의 발전	5. ----- -- 획득 및 관리
6. 국군사이버사령부 업무의 지 도·감독	6. 사이버작전사령부 ----- -----
7. 각 군 및 기관의 사이버 방호 수준 평가와 관리	7.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8. 9. (생략)	8. 9. (현행과 같음)
<16> 사이버대응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 장을 보좌한다.	⑩ 사이버대응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기술의 군 적용 검토 및 기 술분야 대외협력	5. 사이버분야 신기술-----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국방정보체계 취약점 분석 및 평가	7. 국방사이버자산 ----- -----
<신설>	8. 각 군 기관의 사이버 방호 수 준 평가와 관리
제9조(국방정책실) ①·② (생 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 과·기본정책과·방위정책과· 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문화 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 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	③ ----- 정책기획 과·기본정책과·방위정책과· 교육훈련정책과·정신전력문화 정책과·국제정책과·미국정책 과·동북아정책과·국제평화협

력과 다자안보정책과·북한정 책과·군비통제과·미사일우주 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를 두 되, 정책기획과장·방위정책과 장·미국정책과장·북한정책과 장·미사일우주정책과장·북핵 대응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기본정책과장·교육훈련정책과 장·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국 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장· 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보정 책과장·군비통제과장은 부이 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보한다.	력과 다자안보정책과·북한정 책과·군비통제정책과·미사일 우주정책과·북핵대응정책과-- ----- ----- ----- ----- -- 기본정책과장·교육훈련정 책과장·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국제정책과장·동북아정책과 장·국제평화협력과장·다자안 보정책과장·군비통제정책과장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주요 대외 군사정세[미·일 ·중 및 동남아(ASEAN 10개 국)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다]의 분석과 대책 수립	3. ----- ----- <u>남아시아국가</u> ----- -----
4. 국가[미·일·중 및 동남아 (ASEAN 10개국)는 제외한 다]간 군사외교활동	4. ----- <u>남아시 아국가</u>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서울안보대화(SDD) 관련 계획 수립, 대내·외 협조 및 업무의 조정·통제 관련 사항</u>
<u><신 설></u>	<u>8. 지역[미·일·중 및 남아시아지역은 제외한다]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u>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⑩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 미국 관련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u>
⑪ 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동북아 관련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u>
⑫ 국제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 재외국민보호 관련 업무</u>
⑬ 다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지역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2. 아세안 관련 -----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서울안보대화(SDD) 관련 계획 수립, 대내·외 협조 및 업무의 조정·통제 관련 사항	3. 남아시아국가(ASEAN 10개국 및 인도 등 서남아 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4. 동남아 국가(ASEAN 10개국)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4. 남아시아국가(ASEAN 10개국 및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의 군사외교활동
5. 동남아 국가(ASEAN 10개국)와의 군사외교활동	<u><삭 제></u>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⑮ 군비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군비통제정책과장-----.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⑯·⑰ (생 략)	⑯·⑰ (현행과 같음)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⑭ (생 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 관사 입주관리와 전세자금의 확보·관리에 관한 업무	<u><삭 제></u>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생활안정 지원 및 내집마련
지원에 관한 업무

7. 8. (생 략)

⑯ ~ ⑲ (생 략)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②
(생 략)

③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
기획과·탄약관리과·군수품수
명주기관리과·장비관리과·물
자관리과·재난관리지원과·시
설기획과·시설제도기술과·건
설관리과·부대건설사업과·국
유재산과·국방환경협력팀·전
력정책과·전력조정평가과 및
전력계획과를 두되, 군수기획과
장·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물자관리과장·재난관리지원과
장·시설기획과장·시설제도기
술과장·건설관리과장·부대건
설사업과장·국유재산과장·전
력정책과장·전력조정평가과장
및 전력계획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탄약관리과장 및 장비관리과장
은 영관급장교로, 국방환경협력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삭 제>

7. 8. (현행과 같음)

⑯ ~ ⑲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군수
기획과·장비관리과·물자관리
과·탄약수송관리과·재난관리
지원과·안전정책팀·시설기획
과·시설제도기술과·건설관리
과·부대건설사업과·국유재산
환경과·군주거정책과·전력정
책과·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되, 군
수기획과장·물자관리과장·재
난관리지원과장·시설기획과장
·시설제도기술과장·건설관리
과장·부대건설사업과장·국유
재산환경과장·전력정책과장·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
전력계획평가과장-----

----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
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안
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
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
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생 략)

4. 각 군간 상호 군수지원계획
의 수립·조정

5. 육·해·공군 공통군수품 군
수지원체계 및 제도의 연구·
발전

<신 설>

<신 설>

6. ~ 14. (생 략)

15.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

16. (생 략)

-----.

④ -----
-----.

1. (현행과 같음)

2. 군수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5.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6. 3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
·조정·통제

7. 3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
도의 연구·발전

8. ~ 16. (현행 제6호부터 제14
호까지와 같음)

17. 주한미군 -----
--

18. (현행 제16호와 같음)

17. · 18. (생략)	20. · 21. (현행 제17호 및 제18호와 같음)	<신설>	31. 군수정보체계의 관리, 운영 · 유지, 통합 및 표준화
<신설>	19.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 · 조정	<신설>	32. 군수 내 · 외부 체계간 통합 · 연동 및 표준화
19. (생략)	36. (현행 제19호와 같음)	<신설>	33. 군수업무의 정보화 기술 적용
<신설>	22.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신설>	34. 국가 · 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 관리
<신설>	23.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신설>	35. 군수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보좌
<신설>	24.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 · 통제	⑤ 탄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장비관리과장----- -----.
<신설>	25.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1. 탄약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1. 장비 정비----- -----
<신설>	26.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 · 검토 · 조정
<신설>	27. 군수품의 규격화 · 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2. 탄약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 · 검토 · 조정	3. 장비운영유지----- --
<신설>	28.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3. 비축탄약 · 탄약검사 및 정비업무의 조정 · 통제	<삭제>
<신설>	29. 군수정보화 중 · 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 제기 및 검토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4.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신설>	30.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신규소요 발굴 및 체계구축 사업종합 및 조정 · 통제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5. 비축장비 운영----- -----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6.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17. 군수정보체계의 관리, 운영 · 유지, 통합 및 표준화	17.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 리 및 감독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 에 관한 사항	7.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 요검토	18. 군수 내·외부 체계간 통합 · 연동 및 표준화	18.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8. 한국군을 위한 전시에비 미 군탄약(WRSA)의 관리와 탄 약 관련 대미협력사항	8.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19. 군수업무의 정보화 기술 적 용	19.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 원 관련 사항	9.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 (CSR)업무의 조정·통제	20. 국가·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20. 군수품의 총수명주기관리 정책·제도발전 업무
10.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10.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21. 군수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 (CIO)보좌 <신 설>	21.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11.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1.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초빙 교육 관련 업무	<신 설>	22. 국방 RAM(신뢰도·가용도 ·정비도 정책·제도 발전, 야 전운용제원 분석 및 환류에 관한 업무
12. 탄약 관련 종합군수지원 정 책과 제도 발전	12.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 UM) 활동 지원 사항	<신 설>	23. 종합군수지원(ILS) 정책· 제도발전 업무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13.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 센터 조성 관련 업무	<신 설>	24. 성능개량·창정비 통합 집 행업무
14.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	14.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신 설>	25.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발 전 업무
15. 군수정보화 중·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 제기 및 검토	15.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 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 추진 관련 업무	<신 설>	26. 부품 단종 관리 정책·제도 발전 업무
16.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신규 소요 발굴 및 체계구축 사업 종합 및 조정·통제	16.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신 설>	27.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제 도발전 업무
		⑥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은	⑥ 물자관리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발전 업무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수명주기지속계획, 신뢰도·가용도·정비도(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업무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해상·항공장비 수명주기지속계획 및 성능개량·창정비 통합집행 업무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 능력 판단·운영
4.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5. 군 물류정책 수립 및 발전	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6. 부품 단종 관리 및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발전 업무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7.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7. 전력지원체계 물자분야의 소요 검토
8.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통제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무기체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10. 세계무역기구와의 정부조달	10. 영현(英顯)처리-----

협정에 관한 사항	-----
11. 군수품의 규격화·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14. 군수품 결산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4.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결정에 관한 업무
15.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삭 제>
16. 수송정책의 수립·조정·통제 및 제도 발전	<삭 제>
17.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 비행장 및 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도 발전	<삭 제>
19.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도·감독	<삭 제>
20.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결정 및 품목지정에 관한 업무	<삭 제>
21. (생략)	15. (현행 제21호와 같음)
⑦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탄약수송관리과장-----
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1. 탄약-----
2.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2. 탄약분야-----

편성·검토·조정 3.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 획과 예산의 편성·검토·조 정 4.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5.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7.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 요검토 8.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9.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 (CSR)업무의 조정·통제 10.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11.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초빙 교육 관련 업무 12.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 UM) 활동 지원 사항 13.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 센터 조성 관련 업무 14.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 3. 탄약 획득·비축업무 및 탄 약 관리 업무 조정·통제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 ·검사·정비 업무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 에 관한 사항 8. 탄약 관련 대미협력사항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 원 관련 사항 10. 폭발물 처리장 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업무 11. 시험용 탄약의 운영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12. 탄약 관련 종합군수지원 정 책과 제도 발전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14. 국방수송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업무 15.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 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 추진 관련 업무 16.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17.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 리 및 감독 업무 18.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19.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⑧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급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 전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	·통제 및 제도 발전 15. 군 물류정책 ----- ----- 발전 16. 3군 공통 민·관 수송업무 조정·통제 17. 한·미 수송지원 및 협정(M ASA, KFS)에 관한 업무 18. 민간 항공기·선박의 군용 비행장 및 항만 사용에 관한 사항 19.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에 관 한 업무 20. 수송정보체계의 운영 및 제 도 발전 21. 수송예산 편성·운영 및 성 과평가, 통계 관리 22. 국군수송사령부 업무의 지 도·감독 ⑧ 재난관리지원과장----- -----.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 -- 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계획의 수립·조정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	--	--	--

<u>능력 판단·운영</u>	<u>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u>
<u>4. 한·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 에 관한 사항</u>	<u>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u>
<u>5. 한·미간 의무보급(醫務補 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u>	<u>5.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 의 수립·조정</u>
<u>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 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u>	<u>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u>
<u>7. 전력지원체계 물자분야의 소 요 검토</u>	<u>7.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 원 및 협조</u>
<u>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8.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 외기관 협조</u>
<u>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u>	<u>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u>
<u>10.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사항</u>	<u>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u>
<u>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 업관리</u>	<u>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 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 정</u>
<u><신 설></u>	<u>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통제</u>
<u><신 설></u>	<u>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 항</u>
<u><신 설></u>	<u>14. 농어촌 일손 돕기 현황 유지</u>

<u>⑨ 재난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u>· 관리</u>
<u>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 도 발전</u>	<u>⑨ 안전정책팀장----- -----.</u>
<u>2. 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계획의 수립·조정</u>	<u>1.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발 전</u>
<u>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u>	<u>2.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추진</u>
<u>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u>	<u>3. 안전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 협조</u>
<u>5.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 의 수립·조정</u>	<u><삭 제></u>
<u>6. 자연재난·사회재난·재난안 전 및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 무</u>	<u>5.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조정</u>
<u>7.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 원 및 협조</u>	<u>6. 시설물·환경 분야 안전계획 수립·조정</u>
<u>8.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 외기관 협조</u>	<u>7. 장비·탄약, 물자, 수송 분야 안전계획 종합·수립·조정</u>
<u>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u>	<u>8. 체계 개발 단계별 안전사항 검토 제도 구축</u>
<u>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u>	<u>9. 현용 무기체계 안전평가, 성 능개량·개조 소요 발굴</u>
<u>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u>	<u>10. 안전사고 통계지표 개발· 관리</u>
	<u><삭 제></u>

<u>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조정</u>	
12. <u>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통제</u>	4. <u>국가안전대진단</u> ----- --
13. <u>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u>	<삭 제>
14. <u>농어촌 일손 돕기 현황 유지·관리</u>	<삭 제>
⑩ 삭 제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⑮ <u>국유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⑮ <u>국유재산환경과장</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군사시설 관리 업무</u>	4. <u>징발 부동산의 보상 및 권리</u>
5. <u>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u>	<삭 제>
6. <u>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조정</u>	<삭 제>
7. 삭 제	
8. <u>토지수용 업무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u>	<삭 제>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13. <u>국유재산 가치향상 및 경제적 운용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시행</u>	<삭 제>

14. <u>유휴(遊休)재산의 경제적 활용, 처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u>	<삭 제>
15. <u>유휴재산 관리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u>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u>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u>	<삭 제>
18. ~ 28. (생 략)	18.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u>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u>
<신 설>	30. <u>국방·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u>
<신 설>	31. <u>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u>
<신 설>	32. <u>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u>
<신 설>	33. <u>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u>
<신 설>	34. <u>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u>
<신 설>	35. <u>환경보전시설의 설치·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 검토·조정</u>
<신 설>	36. <u>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의 수립·시행</u>
<16> <u>국방환경협력팀장은 다</u>	⑮ <u>군주거정책과장</u> -----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u> 2. <u>수질·대기·토양 및 해양 오염방지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의 수립</u> 3. <u>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u> 4. <u>군 폐기물의 처리 및 감량화 대책 관련 업무</u> 5. <u>소음 및 진동 방지 관련 업무</u> 6. <u>자원절약 및 재활용 대책의 수립</u> 7. <u>유해화학물 관리대책의 수립 및 통제</u> 8. <u>자연정화 및 생태계보전활동과 관련된 업무</u> 9. <u>유해작업장 환경관리 및 개선대책과 관련된 업무</u> 10. <u>환경시설 및 장비의 설치와 운용계획의 수립·시행</u>	-----. 1. <u>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u> 2. <u>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u> 3. <u>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u> 4. <u>군 주거시설 입주자격 관리</u> 5. <u>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u> 6. <u>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영과 기금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u> 7. <u>직원군인 내집마련 지원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u> 8. <u>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조정·종합 및 요구</u> 9. <u>군 관사·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보수에 대한 집행 관리</u> 10. <u>군 주거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u>	11. <u>군 환경 관련 중기 및 연도 예산의 검토·조정</u> 12. <u>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의 수립·시행</u> <17> <u>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9. (생략) <18> <u>전력조정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u> 2. <u>분석평가 및 비용분석에 관한 업무</u> <신설> <신설> 5. 「방위사업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재분석·평가 및 시정조치 요구 6. <u>분석평가결과 목록정보의 관리</u>	11. <u>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및 유지</u> <삭제> ⑰ <u>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9. (현행과 같음) ⑱ <u>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u> 1. <u>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u> 2. <u>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배분 업무</u> 3. <u>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소요검증 업무</u> 4. <u>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u> 5. <u>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u> 6. <u>방위력개선(기반전력)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u>
--	--	--	---

7.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 체계 등에 대한 소요검증 업무	7.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방중기 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원 수립
8. 시험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삭 제>
9.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삭 제>
10. 시험평가 관련 예산의 확보 및 지원	<삭 제>
<19> 전력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9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
1.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 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1.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 자원 판단·배분 업무
3.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의 지침 작성	3.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4. 방위력개선분야 가용자원 판단 및 배분	4.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5. 방위력개선분야 관련업무의 조정 및 통제	5.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 관련 업무 -----
6.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 편	6. 방위력개선(공통전력)사업의

성에 관한 사항	----- 업무
<신 설>	7.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검증 · 시험평가· 분석평가 제도 발전
제19조(국방개혁실) ①·② (생략)	제19조(국방개혁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개혁실장 밑에 전력구조 개편담당관·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인사교육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전력구조개편담당관 및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인사교육개혁담당관 및 자원관리개혁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군구조개혁담당관·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 -----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
④ 전력구조개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군구조개혁담당관-----
1. 국방개혁(전력구조 개혁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의 총괄·조정	1. 국방개혁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9.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신 설>	10.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신 설>	11.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신 설>	12.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 도별 시행계획 종합
<신 설>	13.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신 설>	14.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10.·11. (생 략)	15.·16. (현행 제10호 및 제11 호와 같음)
⑤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 좌한다.	⑤ 미래군구조기획담당관----- ----- -----.
<신 설>	1. 미래 군구조 개혁 분야 총괄 ·조정
<신 설>	2. 미래 전략개념 발전 분야 연 구·기획
<신 설>	3. 미래 지휘구조 개념발전 분 야 연구·기획

<신 설>	4. 미래 부대구조 개념발전 분 야 연구·기획
<신 설>	5. 미래 병력구조 개념발전 분 야 연구·기획
<신 설>	6. 미래 전력구조 개념발전 분 야 연구·기획
1.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7. 전력구조 ----- --
2.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8. 전력구조 ----- --
3.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9. 전력구조 ----- --
4.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부서의 연 도별 시행계획 종합	10. 전력구조 ----- --
5.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11. 전력구조 ----- --
6. 지휘·병력·부대구조 개혁 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12. 전력구조 ----- --
⑥ 삭제	
⑦ 인사교육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	⑦ 국방운영개혁담당관----- -----

다.	--.
1. 인사, 인력, 교육, 보건, <u>복지</u>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정책 의 총괄·조정	1. ----- <u>복지,</u> <u>군수, 시설, 정보화</u> ----- -----
2. 인사, 인력, 교육, 보건, <u>복지</u>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국방 개혁기본계획 수립·변경	2. ----- <u>복지,</u> <u>군수, 시설, 정보화</u> ----- -----
3. 인사, 인력, 교육, 보건, <u>복지</u>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5년 단 위 추진계획 수립·시행	3. ----- <u>복지,</u> <u>군수, 시설, 정보화</u> ----- -----
4. 인사, 인력, 교육, 보건, <u>복지</u>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각 시 행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 계획 종합	4. ----- <u>복지,</u> <u>군수, 시설, 정보화</u> ----- -----
5. 인사, 인력, 교육, 보건, <u>복지</u>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5. ----- <u>복지,</u> <u>군수, 시설, 정보화</u> ----- -----
6. 인사, 인력, 교육, 보건, <u>복지</u> 및 예비전력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 과의 협의	6. ----- <u>복지,</u> <u>군수, 시설, 정보화</u> ----- -----
⑧ <u>자원관리개혁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 다.	⑧ <u>스마트국방혁신담당관</u> ----- ----- --.
1. <u>자원관리 개혁 분야 정책의</u> <u>총괄·조정</u>	1. <u>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u> <u>업 추진 총괄·조정</u>

2. <u>자원관리 개혁 분야 국방개</u> <u>혁기본계획 수립·변경</u>	2. <u>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 운</u> <u>영</u>
3. <u>자원관리 개혁 분야 5년 단위</u> <u>추진계획 수립·시행</u>	3. <u>스마트 국방혁신에 필요한</u> <u>사업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u> <u>협의</u>
4. <u>자원관리 개혁 분야 각 시행</u> <u>기관·부서의 연도별 시행계</u> <u>획 종합</u>	4. <u>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u> <u>업에 대한 추진 점검</u>
5. <u>자원관리 개혁 분야 개혁과</u> <u>제의 추진실적 분석·평가</u>	<삭 제>
6. <u>자원관리 개혁에 필요한 추</u> <u>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u> <u>의 협의</u>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852호 국방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국방부령 제852호 국방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국방환경협력팀은 2021년 2월 7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 ----- ----- ----- -- 2020년 ○월 ○○일-----.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② -----

국방환경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 터 <u>시설기획과장</u>이 분장한다.	----- ----- ----- ----- --- <u>국유재산환경과장</u> ---.
--	---